

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6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2년 4월 일
제출자: 평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 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 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
 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 개선(연가수혜범위 확대)

2. 주요골자

- 군수는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(아래산출방식)도록 함
$$12(\text{월})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 \\ \hline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12(월)
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1. 관련자료 : “별첨”(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)
2. 관계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6조의2의 제목 "토요전일근무제"를 "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"로 하고 동조 제1항중 "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"를 "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"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"토요전일근무제"를 "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"로 한다.

제20조제1항중 "휴직일수"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,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.5일미만은 절사한다.

$$\textcircled{O}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\text{월}-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 ① <u>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u></p>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<u>① 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u></p>	<p>제16조의2(<u>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</u>) ①----- ----- ----- <u>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u></p>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<u>① 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u></p> <p>② <u>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

현 행	개 정 안
	<p>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.5일미만은 절사한다</p> <p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</p> $\frac{12\text{월}-\text{당해년도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
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한다.	③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	④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22조(공가) 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	제22조(공가) 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현 행	개 정 안
	<p><부 칙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.</p>

강원도

우 200-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/ 전화 033-249-2542 / 전송 033-249-4022
 총무과 과장 진연진 서무담당 손홍락 담당자 정병두

문서번호 총무 12100 - 1084

시행일자 2002. 3. 23. (년)

(경유)

수신 받는 곳 참조

참조 자치행정·총무과장

선 람	부 장	<i>Editor</i>	지 시	증명서 발급
접 수	일자 시간	2002. 03. 25. :	결 재	
	번호	1697	당 당	<i>ceo</i>
	처리과	자치행정과	공 동	
	담당자	<i>o Carter</i>	공 람	
	심사자		심 사 일	

별도: 기획감당부 6320

제 목 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통보

- 행정자치부 운영 12100 - 274(2002. 3.23)호와 관련입니다.
- 행정기관의 「주5일제 근무제」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002. 4.13까지 개정·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1부. 끝.

강원도지



받는 곳 : 더(01-18)

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개정

1. 개정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행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
고충 호소
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
연가공제방법 개선 (연가수혜범위 확대)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
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(아래산출방식)도록 함 (안 제20조제2항)

$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(안 제22조)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표준안)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"(토요전일근무제)"를 "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"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중 "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"를 "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"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(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이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�数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

비판은 절사한다.

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$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

제22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 ①</p> <p>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농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(*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(*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이 정한다.</p>	<p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</p> <p>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(*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이 정한다.</p>
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/p> <p>①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품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/p> <p>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

<신 설>

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
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
의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
고는 당해년도의 휴직기간
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
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
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
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
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 계산
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
소수점이 하일 경우 0.5일 이상
은 반올림 하고, 0.5일 미만은
절사한다.

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

12월 - 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

12월

× 당해년도 연가일수

① 질병이나 부상의의 사유로
인한 자참·조퇴 및 외출은
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
산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
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
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
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
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
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
니한다.

제22조(공가) ①(생 략)

6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
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
을 할 때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22조(공가) ①(현행과 같음)

6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
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
할 때

<부 칙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
행한다.

강 원 도

우 200-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/ 전화 033-249-2542 / 팩스 033-249-4022
 총무과 과장 진연진 서무담당 손홍락 담당자 정명두

문서번호 총무 12100 -

시행일자 2002. 4. . (년)

(경유)

수신 받는 곳 참조

참조 자치행정·총무과장

선파	정유	여행	지시	4월 28일
접	일자 2002. 4. 23.	시간 :	결재	
수	번호 1946		공	ce-28
	처리과 자치행정과		람	
	담당자 정연진			
	심사자		심사일	

제 목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수정 시달

- 총무 12100 - 1084(2002. 3.23)호와 관련입니다.
- 상기호로 시달한 개정조례 표준안중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수정·시달하니 등 수정안대로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수정안 내용 1부, 끝.

강 원 도 지



받는 곳 : 데(01-18)

수정안 내용

개정안	수정안
<p><u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(*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----- 소속공무원을 월1회 등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